

대전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19가단165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임지혜

변론 종결 2020. 12. 16

판결 선고 2021.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409,000원과 그 중 35,639,2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 다음날부터, 1,77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3. 청구취지변경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분양대행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같이 근무하였 는데 원고가 피고의 상사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6. 7.부터 2019. 2. 26.까지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다.

다. ① 세종특별자치시 D(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지분 일부가 2018. 6.12.과 2018. 8. 6. 피고 앞으로, ② 세종특별자치시 E(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지분 일부가 2019. 2. 19. F(피고의 전 남편) 앞으로, ③ 경기 광주시 G(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지분 일부가 2019. 4. 12. 피고의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2. 26.까지 합계 296,763,000원을 빌렸는데 피고에게 변제할 차용금 잔액이 3,120,800원이다.

원고는 피고가 C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토지의 매매대금 38,760,000원(=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 1,290만 원 +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 1,290만 원 + 이 사건 제3토지의 매매대금 1,190만 원)을 대납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토지 대납금과 차용금 잔액의 차액인 35,639,200원(= 토지 대납금 38,760,000원TM차용금 잔액 3,120,8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2018년말 피고의 실적이 부족하여 같은 팀 H의 실적(평택시 I 토지 지분을 그에 게 매도,거래가액 1,470만 원)을 피고 앞으로 올려줘 피고가 수수료 1,770,000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 대납금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금을 피고가 C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토지대납금과 차용금 잔액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C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보건대,위 인정사실과 갑

제12, 16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에 이 사건 각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가 수사기관에 원고를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그 수사과정에서 원 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수사기관에서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여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면 피고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토지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전 남편 F 앞으로 2019. 2. 19.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F이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9차전1704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빌려준 1억 원 중대여금잔액 65,534,526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원고는 2019. 11. 27. '이 사건 2토지를 F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조로 지급하면서 2019. 2. 19.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2018.9. 30. C에 매매대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있다.

2) 수당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H가 받아야 할 수당을 피고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청구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정기